

제27대 회장선거 후보자 유의사항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제27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27대 회장선거 후보자 유의사항

제19조(선거운동 기간) 2020년 1월 6일-2021년 1월 14일 자정까지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소견발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동영상을 후보자로부터 1월13일 18:00까지 제출을 받은 후 선관위에서 사전 검토 후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5일 09:00 내외에 기호 순번 순으로 공지하며 마감일까지 제출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협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1. 후보자는 선거기간과 선거당일에 어깨띠와 명함을 제작 및 활용할 수 없다.

2. 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항

가. 당선인이 된 경우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 반환

다.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미만으로 득표한 경우 기탁금 반액 반환

라.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는 기탁금 반환 불가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중도 포기, 사퇴나 등록 후 문제가 발생하여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불가)
단, 유효투표 비율 산정에서 정확한 산정이 모호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으로 한다.

3. 선거운동 방법 관련

⇒ 규정 상, 휴대폰이나 SNS 계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문자메세지의 경우 URL 링크 등을 문자내용에 포함시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문자 외에 사진,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됩니다.

문자 메시지와 전화는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본인이 소속한 단체의 법인 등으로 개설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이용 가능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 본 협회가 개설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전자우편 전송 및 SNS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단, 사무처 직원이나 후보자 이외의 자가 대행할 수 없음

5.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사례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비트윈, 클래스팅,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들 수 있음

참고로 ZOOM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준하여 가능함.

단, SNS를 이용 시, 단체 그룹방을 만들어 진행할 수 없음

*상기 사례 이외의 구체적 수단에 따른 가능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질의하여야 함

그리고 SNS를 이용한 정보전달 가능 방식은 제한하고 있지 않음

6. 후보자 홍보영상, SNS, 문자 메시지, 선고공보 등에 중앙협회 로고 사용 가능 여부?

(대한체육회는 활용 가능함, 단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

⇒ 우리 협회도 중앙협회 로고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로고내용 변경은 불가

7. 선거홍보물에 유명인사의 추천사를 기재할 수 있는지?

⇒ 불가함. 후보자 본인만 가능함

8. 후보자가 요청하는 선거인명부 자료 수령 방법?

⇒ 1월 6일 후보자 기호추첨 때 출력물만으로 제공

9. 후보자가 회원단체 행사장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할 수 있는지?

⇒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후보자가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행사에 참석한 후보자를 동등하게 소개하는 것은 무방. 다만 행위 양태에 따라 규정에 위반 될 수 있으니 유의.

그리고 부회장에게 직무를 대행한 후보자가 회장의 지위에서 축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로 지정한 부회장이 하여야 함.

10. 선거운동 방법 중 후보자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데 다수의 인원과 영상통화가 가능한지?

⇒ 후보자가 송화자,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또는 문자(문자 외에 사진,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라면 영상통화도 무방하고 수화자의 인원은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불가

11. 선거인에게 전화 시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음성메세지를 남길 수 있는지?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송화자,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음성메세지를 남겨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12. 후보자가 선거인과 전화통화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로 후보자를 홍보하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세지 등 후보자 관련 정보를 통화 중인 선거인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하다. 다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자 외에 사진,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전송할 수 없다.

13.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를 하면서 선거인의 동의를 얻어 후보자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선거인과 통화 중에 선거인의 동의를 받고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은 직접 통화의 부수되는 행위로 보아 무방하다.

14. 소견발표회 당일 후보자가 행사장 입구에서 입장하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기 소개 및 지지(악수 포함)를 할 수 있는지?

⇒ 우리 협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소견발표를 동영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선거인 대상으로 자기소개 및 지지 행위는 불가함.

다만, 후보자가 불특정 선거인을 대상으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없이 단순히 구두로 자신을 소개(“기호 몇 번 ○○○입니다”)하거나 악수를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음

(단, 선거공보 자료 배포, 명함 배포 및 어깨띠 금지)

또한 후보자 외에 타인이 후보자를 소개하거나 지지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무리를 지어 연호(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행진하는 행위도 금지

15. 후보자가 선거종료 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 선거인 또는 선거인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식사나 향응을 접대하는 것은 불가함.

16. 후보자 정견발표

가. 방법: 코로나19 상황에 의하여 후보자 정견발표는 동영상으로 10분 이내로 제작하여 2021년 1월 13일 18:00 본 협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정견발표 동영상 제출 시 유의사항

- 1) 10분 이내로 제작하여야 하며 10분 초과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영상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2) 제출마감일이 지날 경우 정견발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제출 후보자의 동영상을 통한 정견발표는 생략함
- 3) 동영상에는 후보자가 어깨띠(기호, 후보자 성명 포함)를 두르고 제작 가능
-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동영상을 검토하여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영상 상영이 제한될 수 있다.
- 5) 선거관리위원회 검토 후 2021년 1월 15일 09:00 경에 중앙협회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업로드 순번은 기호 순번 순)
- 6) 정견발표 제작 시, 후보자 본인만 동영상 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후보자를 제외한 자는 동영상 화면 내용에 들어갈 경우 영상상영에 제한될 수 있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제27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